

제321회 임시회
2013. 6. 12(수)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충 청 북 도 환 경 교 육 진 흥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3년 6월 3일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4일

3. 제안이유

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진흥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기반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 수립·시행 (안 제3조)

나.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 제5조, 제6조)

다.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환경교육센터 설치·지정운영 근거 마련 (안 제7조)

라. 환경교육센터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안 제8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5조에는 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 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 입법예고('13. 4. 12. ~ 5. 1.)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
- 조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가.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제출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